

수원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가단71985(본소), 2015가단1655(반소) 판결

[구상금 · 점유이탈물반환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의료법인 B

변론 종결 2015. 10. 8.

판결 선고 2015. 11.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53,467원과 그 중 14,386,306원에 대하여 2013. 2. 8.부터, 1,667,161원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각 2014. 9. 18.까지는 연5%,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2015. 10. 1.부터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8,468,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1. 30. 그 산하에 안성시 소재 C병원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인 피고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선임등기에 이르지 못하고, 이사장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3. 2. 7. 피고의 주식회사 아워홈에 대한 식자재대금채무 14,386,306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2013. 2. 15. 1). 피고의 간병비 채무 1,667,161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2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053,467원 및 그 중 14,386,306원에 대하여 각 변제일 다음날인 2013. 2. 8.부터, 1,667,161원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각 2014. 9. 18.(본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랐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계좌에서 2013. 2. 14. 42,854,839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는데, 그 중 원고가 주식회사 아워홈에 변제한 식자재대금 14,386,306원을 공제한 28,468,533원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2. 14.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42,854,839원이 송금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갑5, 6,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간병비채권 44,522,000원의

지급청구를 받은 원고는 위 돈에 자신의 돈 1,677,161원을 더하여 2013. 2. 14.에 3,700만원을, 그 다음날 7,522,000원을 간병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28,468,533원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용한

1) 원고는 2014. 2. 14.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로부터 송금된 돈의 잔액이 위 돈을 초과하므로, 그 다음날에 원고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다.